

「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입주작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위탁 운영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, 제5조, 제39조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,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4조제5항의 ‘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’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.
- 이에,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 본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위배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부에서는 창작공간을 이용하는 많은 청년작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임.